##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

제정 2016. 4. 7 조례 제272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바르게살기운동조직"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동 위원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  - 2. "바르게살기운동회원"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하다.
  - 3. "바르게살기운동사업"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보조금의 지원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 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 성법」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바르게살기정신의 계승·발전을 위한 사업
  - 2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·활동경비
  - 3.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
- 제4조(준용)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